

##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가 개선사항 안내

국토교통부의 별폐입찰 근절 방안 발표에 따라 공급제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('22.9.2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)

### □ 안내사항

- (인센티브 적용 유보) '22.4월 이후부터 시행되었던 사전(본)청약 인센티브(가점, 우선공급)는 별도 안내 시까지 잠정 중단\*

\* (변경사항) 추첨 및 경쟁방식 내 가점 제외, 우선공급 필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  
- 단, 매입약정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변함없이 적용(추첨 및 경쟁방식 가점)하되, 우선공급은 사전(본)청약 인센티브 적용 재개 시까지 중단

### □ 제도개선 사항(시행시기 : ①,④,⑤ 10월 중, ②,③ 주택법 개정 이후)

- ① (1사1필지 청약제한) 계열사의 과다 청약을 제한하기 위해, 모기업과 그 계열사는 1필지에 1개사만 청약에 참여 가능(세부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)
  - (계열사 판단기준) ①공정거래법상 동일 공시대상기업집단(제31조)에 속하거나 ②외부감사법상 특수관계자(제23조)에 해당하면 계열사 관계로 판단
  - (적용대상 및 기한) 규제지역(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, 과밀억제권역) 내 300세대 이상 추첨공급 공동주택용지('22.10월 중 ~ '25년)
- ② (현장조사 정례화) 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등록기준 미달 여부 등의 점검을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 결과 통보(주택법 개정 필요)
- ③ (불법 등록증 대여 처벌 강화) 현재 대여자에서 차용자, 알선자, 공모자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(주택법 개정 필요)
- ④ (업무수행 기준 명확화) 택지당첨 업체가 별도의 계약, 협약 등이 없이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을 경우\* 계약해제 및 택지공급 제한(3년)
  - \* 택지계약 시부터 주택분양까지의 업무를 계약업체 소속직원이 아닌 他 업체 소속직원이 수행하는 경우 등(세부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)
- ⑤ (대리인 범위 명확화) 택지계약, 명의변경 등의 업무 수행 시 대리인 범위를 소속직원(2년 이상 재직자 원칙)으로 한정하고 증빙자료(재직증명서 등) 제출 의무화